비상대책위원회

우리 학교와 가장 상황이 비슷한 학교를 찾을 것

분류

1.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로 구성된 경우

2.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단과대학 학생회, 단과대학 대의원회, 학과 학생회로 구성

비상대책위원회 분류

1. 총학생회 비대위 궐위

2025년도 총학생회가 궐위 했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 나열

1) 학생총회 의장 (궐위 시 총대의원회 의장이 맡는다.)

2) 중앙운영위원회 (궐위 시 공석)

3)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궐위 시 대의원회 의장이 대행)

나의 생각: 현재 총대의원회 의장이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이의 있는 단대장들은 있는지? 의견이 궁금

타 대학과 비교: 타 대학은 보통

2. 단과대학 학생회 궐위 (모두 궐위 시에 대한 방안 없음)

- 정학생회장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 권한 대행)

- 부학생회장 공석인 경우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는 후보 1인을 선임 후 단과대학 대의원을 소집하여 소속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새로 임명)

3. 학생복지위원회 궐위 (모두 궐위 시에 대한 방안 없음)

- 위원장 궐위 시 (부위원장이 권한 대행)

- 부위원장 공석인 경우  
(확대운영위원회는 후보 1인을 선임 후 대의원 총회를 통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새로 임명)

4. 동아리연합회 궐위 (모두 궐위시에 대한 방안 없음)

- 정회장 궐위 시 (부 회장이 권한 대행)

- 부 회장 (궐위 시 각 동아리의 회장단은 후보 1인을 선임, 대의원총회를 통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새로 임명)

비상대책위원회

성립

1. 자치기구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임기 중 자치기구의 대표와 부대표 모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목적: 000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해당 자치기구의 정상적인 운영과 집행이 가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는 각 학생자치기구의 선거가 무산되거나 정,부 대표자 모두 궐위 시 해당 기구의 임시 운영, 집행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이다.